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50
가지

퇴직을 앞둔 직장인의 노후준비 길라잡이

1

PART 퇴직급여

일러두기

- * 본 책의 내용은 2026년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본 책의 소득세율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DB형 가입 근로자는 '퇴직 이전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에 '계속근로 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퇴직급여 종류와 퇴직급여 수령액

퇴직급여 종류		퇴직급여 수령액
퇴직금		퇴직 이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이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로 수령해야 합니다.
- ☒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일시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할 수도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데,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이연 퇴직소득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 퇴직급여 규모가 클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 ☒



CHECK 2 퇴직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나?

그렇지는 않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다. 이 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퇴직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면 그해 소득세 부담이 커

중간정산 했으면 퇴직소득세 더 내나요?

-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면,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를 산출합니다.
- ☒ 중간정산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퇴직소득

공무원 퇴직수당에도 퇴직소득세 부과되나요?

- ☒ 공무원이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 ☒ (명예)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납입 월수에서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여기에 퇴직할 때 받은 퇴직수당을 곱해 나온 금액이 과세 대상 퇴직수당이다. 예를 들어보자. A 씨는 1993년 3월 1일에 공무원에 임용되었고, 2025년 6월 30일에 퇴직하면서 퇴직수당으로 8천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32년 4개월(388개월) 동안 기여금을 납입했고, 이 중 2002년 이후 기여금을 납입한 기간은 23년 6개월(282개월)이다. 따라서 A 씨가 받은 퇴직수당 8천만 원 중 5,814만 원(=8천만 원×282개월/388개월

CHECK 2 임원 퇴직급여를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소득세법에 임원 퇴직소득 한도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정관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를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원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 아낄 수 있습니다.
- ☒ 퇴직급여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

퇴직급여, 연금저축과 IRP중 어디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 ☑ IRP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부터 ETF,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30%는 안전형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 ☑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위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 매매가 되지 않고 신탁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고, 연금저축보험은 금리 연동형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IRP와 달리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ETN에 투자하지는 못한다.

내게 맞는 연금수령 방법은 무엇일까요?

- ☑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하면 금액지정방식,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연금을 받고 싶으면 기간지정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려면 종신지급방식, 수시로 필요한

한다. 수익률이 좋으면 연금을 많이 받겠지만, 나쁘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CHECK 4 절세혜택을 누리며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연금수령에 따른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최대한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수령한도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해당하는

한 해에 연금을 얼마까지 찾아쓸 수 있나요?

- ☑ 연금계좌 적립금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CHECK 3 연금소득 재원은 무엇인가?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소득

DC형에서 가입중인 금융 상품을 IRP로 이전할 수 있나요?

-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할 때는 가입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해서 현금화한 다음 옮겨야 합니다.
-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같은 금융회사 IRP로 옮기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나요?

- ☑ 연금저축으로 옮긴 퇴직급여는 언제든지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 IRP로 이체한 퇴직급여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CHECK 2 IRP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IRP 적립금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중도 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2

PART

개인연금

오래된 연금, 해지하면 안 되나요?

- ☑ (구)개인연금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구)개인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 하면

연금 받으면서도 투자할 수 있나요?

- ☒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연금계좌 적립금은 펀드와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 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매도해야 할

연금수령 시 금융상품은 어떤 순서로 매도하나요?

- ☑ 연금이 개시되면 가입자가 정한 순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매도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 ☑ 가입자가 매도순서를 정하지

3

PART

국민연금

